## 김천 스마트 물류 복합시설 활용 기술개발 참여기업 모집공고

스마트 물류 분야 기술발전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한국도로 공사[이하 공사(公社)]는「김천 스마트 물류 복합시설 활용 기술개발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 5. 21.

한국도로공사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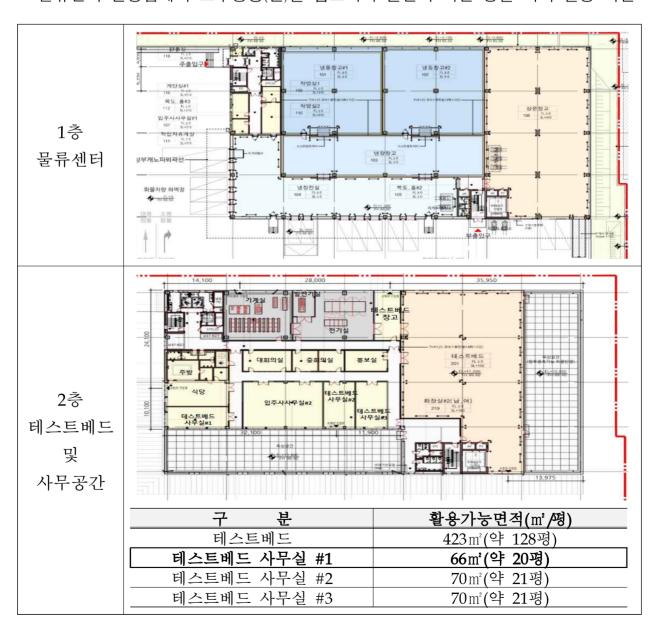
### 1. 지원사업 개요

- ㅇ (목 적) 민간의 물류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으로 스마트 물류 활성화
- ㅇ (위 치) 김천1일반산업단지內(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2008-1일대)
- o (시설구성) 물류센터, 테스트베드, 드론 이·착륙장, 사무공간 등
  - 1층 : 3,494 m²(물류센터) \* 경비동 : 16㎡
  - 2층 : 2,503 m²(테스트베드 및 사무공간)
- o (대상기술) 운용중 물류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및 드론을 활용한 배송 기술
  - \* 콜드체인 물류운영, 입출고, 피킹, 검품·검수, 소분, 포장, 재고관리, 물류수요예측, 인건비·에너지 절감, 친환경 물류, 유통기한 관리, 식품위생 물류, 수배송 효율화, WMS, 기타 물류 관련 장비·기기·설비 등
- 이 (모집규모) 스마트 물류 기술(물류센터, 드론 등) 개발 중소·벤처기업 1개社
- o (지원기간) 2년(+1년\*, 필요 시 1년 연장)
  - \* 2년 이내 기술개발이 어려워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기술적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쳐 필요 시 1년 연장

o (지원내용) 기술개발·실증 및 상용화 지원

구 분	내 용	비고
	- 테스트베드, 드론 이·착륙장, 사무공간 무상 제공*	
① 기술개발·	·(센터 기술**) 테스트베드 활용 기술개발 및 실증	
실증 지원	·(드론 기술) 드론 이착륙장 활용 드론 배송	
	기술개발 및 실증	
② 상용화 지원	- 도공 기술마켓 등록 지원	
③ 기타사항	- 대·내외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 \* 공간 임대료를 제외한 전기·수도세 및 기타 관리비 등은 사용자 부담
- \*\* 물류센터 운영업체의 요구성능(안)을 참고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실증 지원



### 2. 기업선정

- ㅇ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응모 가능
- ㅇ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 포함 자(기업)
- ㅇ (평가방법) 업체 제안서 기반 계량(10점) 및 비계량(90점) 평가
- ㅇ (평가항목)

평가항목	루	평가지표	배 점	비고		
문제인식	<b>근제인식</b> (10점) 기술을 개발하게 된 동기, 목적 및 정부정책					
기스서	(30.24)	개발기술의 기능적 우수성	15			
기술성	(30점)	개발기술 목표성능의 우수성	15	비		
시청기노서	(30.24)	유사기술 대비 개발기술의 경쟁력(차별성, 창의성 등)	15	계		
실현가능성	(30점)	개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15	량		
성장전략	(10점)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10			
팀 구성	(10점)	참여인력의 역량, 활용 방안의 타당성 및 정부정책	10			
정부정책	(10점)	대구·경북도내 기업(10), 그 외(8)	10	계량		
		소 계	100			

- ㅇ (점수산정) 상대평가(평가항목 별 평가)
  - 동점일 경우, ① 기술성, ② 실현 가능성 항목 순으로 고득점 기업을 선정
- (선정방법) 고득점 순으로 물류센터 기술 개발 분야 2개社, 드론 배송 기술 개발 분야 1개社 선정
- ㅇ (선 정 일) '23. 8월 중 결과 개별통보
- ㅇ 선정된 업체가 참여 포기 시 차순위 업체를 지원업체로 선정
- ㅇ (선정취소) 아래에 해당 시 선정 후에도 임의취소 가능
  - 제출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원 필요성을 상실한 경우
- ㅇ 신청업체 수가 모집 정원 미달 시에는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평가진행
  - 평가점수 80점 이상 지원업체로 선정
- ㅇ 신청업체 당 1개 분야만 지원 가능(2개 분야 중복 지원 불가)

### 3. 참여신청

- (신청기간) 2025. 5. 21.(수) ~ 7. 1.(화) 16:00
- (신청방법)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 ※ 상생누리 홈페이지(www.winwinnuri.or.kr) 로그인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기업명 '한국도로공사' 입력 후 검색) → '한국도로공사 김천 스마트 물류 복합시설 활용 기술개발 참여기업 모집' 신청
- ㅇ (제출서류) 아래의 서류 1부씩 제출

1	신청서 [붙임1]	2	제안서 [붙임2]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3]	4	사업자등록증
(5)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6	금융거래확인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기타 증빙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인 경우 예외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채무변제 상환내역확인서(정부24))
-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자 (채무조정합의서(신용회복위원회))
-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 책결정이 확정된 자 (회생계획인가, 변제계획인가, 면책결정(법원))
-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자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재도전·재창업 재 기지원보증' 관련 내용이 기재된 공문)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인 경우 예외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모범납세자증명서(홈택스) 또는 압류·매각 유예 통지(국세징수법 시행 규칙 제92호 서식))
- \*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성실납세자확인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결 과 통지서(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호 서식))
- \*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지정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신청업체의 변제방식(일시적인 세금 납부 연기, 할부 납부 방식, 세금 부담의 일부 면제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증빙)
- (문 의 처) 한국도로공사 사업개발처 천시은 대리 ☎ 054-811-3525

### 4. 추진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제출서류검토 및 보완 요청		평가 및 선정
한국도로공사	<b>→</b>	참여기업 (한국도로공사)	<b>→</b>	한국도로공사 (→참여기업)	<b>→</b>	한국도로공사

(8)

### 5. 유의사항

- ㅇ 한국도로공사는 본 사업을 통한 기업지원 성과를 공개할 수 있음
- ㅇ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이 테스트베드 및 사무공간 등 제공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 상의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음
- 신청업체는 자격요건 및 지원제외 대상을 확인하고 본 사업의 지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하고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숙지 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음
- 한 분기 별 진도점검을 통해 기술개발 및 실증이 성실히 수행되지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의무사항 미준수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ㅇ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협약에 따름
- ㅇ 상기 사업은 한국도로공사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붙임 1. 신청서(서식)

- 2. 제안서(서식)
-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4. 협약서(안)

## 붙임 1 신청서(서식)

김천 스	느마트 물류 톡	흑합시설	활용	기술	개발 참0	여 신청서	
기 술 명							
기 업 명							
대 표 자			업종 및	업태			
설립연도			참여분	<del>!</del> 0‡	물류센터 기	술 / 드론 배송 기술	
주 소	(우편번호 00000)	000도 0	0011005	로 00	길		
	지 표	2020	)년	2	021년	2022년	
기업현황 (최근3년)	매출액(백만원)	000	0		000	000	
(400)	임직원 수(명)	00	)		00	00	
AID CLCLTI	성 명	00	0	부서	서 / 직위	운영팀 / 과장	
실무 담당자	연락처	000-000	0-0000	E	-mail	abc@naver.com	
기 타 기업현황	자유롭게 기술						
	I						
	• 제안서				[붙임2]		
	• 기업·개인 정보	활용 동의/		[붙임3]			
	• 사업자등록증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금융거래확인서		_				
	• 납세증명서(국세	, 지방세)					
	• 기타 증빙서류						

위와 같이「김천 스마트 물류 복합시설 활용 기술개발」참여를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2025년 0월 0일

기업명: ㈜ 이 이 여인

한국도로공사 귀중

김천 스마트 물류 복합시설 활용

## 기술개발 참여 제안서

## [신청기업명]

# 목 차

1.	기술개발 동기 및 목적00
2.	개발기술 현황 및 계획00
3.	경쟁력 및 사업화 전략00
4.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00
5.	참여인력00
6.	안전 및 보안 관리 계획00

1	フ	l 숙기	山山	동기
⊥.		しきノル	I 72	~ O /

0

작성 요령(제출시 삭제)

ㅇ 본 기술을 개발하게 된 동기를 자유롭게 기재

### 2. 기술개발 목적(필요성)

0

작성 요령(제출시 삭제)

ㅇ 개발기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기재

1	ᆌᄼᇬ	6) <del>-</del> 1	<del>11</del> ]	11) Ó
Ι.	기술의	펀니	六	দাস্ত

0

\_

#### 작성 요령(제출시 삭제)

- ㅇ 해당기술의 작동 원리를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
- ㅇ 이론적 근거 내용 및 과학적 · 공학적 원리와 근거 제시
- ㅇ 기술 또는 제품의 적용공정에 대하여 도면,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설명

### 2. 기술의 목표성능

0

\_

#### 작성 요령(제출시 삭제)

ㅇ 개발기술의 목표성능을 구체적 수치를 사용해 제시

### 3. 기술개발의 내용

- ① 1년차
  - 기술개발 목표

-

○ 기술개발 내용 및 범위

\_

- ② 2년차
  - 기술개발 목표

\_

○ 기술개발 내용 및 범위

-

#### 작성 요령(제출시 삭제)

ㅇ 기술개발 목표 및 기술개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 3. 기술개발 일정 및 주요 결과물

① 1년차

구분	구분 세부 내용					ç	일 경	형(월	)					주요 결과물
丁ゼ	기단 개구 대공	1	2	3	4	5	6	7	8	9	10	11	12	<b>一工 包叶</b> 室
1														
2														
3														
4														
5														

② 2년차

구분	78 118 110					ç	일 경	형(월	주요 결과물					
丁铊	구분 세부 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b>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b>
1														
2														
3														
4														
5														

#### 작성 요령(제출시 삭제)

o '3. 기술개발 내용' 중 '기술개발 내용 및 범위'를 세분화하여 세부 기술개발 내용을 제시하고, 수행일정, 주요 결과물 등 기재

### 4. 시설 활용 계획

0

\_

#### 작성 요령(제출시 삭제)

O 테스트베드, 드론 이착륙장, 물류센터 등 활용을 통해 개발, 실증 또는 검증하고 자 하는 사항

1	フ	술의	경	쟀	검
ㅗ.	_		ໍ່ດ	· 0	_

0

\_

작성 요령(제출시 삭제)

ㅇ 유사기술 대비 차별성, 창의성 등을 기재

### 2. 사업화 전략

0

\_

작성 요령(제출시 삭제)

ㅇ 사업화 계획, 방안 등을 자유롭게 기재

1.	소요자금
----	------

0

\_

작성 요령(제출시 삭제)

ㅇ 기술개발 등을 위한 소요자금을 자유롭게 기재

### 2. 조달계획

0

\_

작성 요령(제출시 삭제)

ㅇ 기술개발 등을 위한 소요자금의 조달계획을 자유롭게 기재

### 1. 참여인력 현황

합 계	행정파트	기술파트
0 명	0 명	0 명

작성 요령(제출시 삭제)

ㅇ 참여인력 현황을 행정/기술직 구분하여 기재

### 2. 참여인력의 역량

0

\_

작성 요령(제출시 삭제)

ㅇ 개발기술과 관련한 참여인력의 이력,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재

### 3. 참여인력 활용 방안

0

\_

작성 요령(제출시 삭제)

ㅇ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참여인력의 활용 방안을 자유롭게 기재

### 1. 안전관리 이행계획

0

\_

#### 작성 요령(제출시 삭제)

○ 제공 인프라(테스트베드, 사무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활동에 대한 안전책임자의 지정・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을 기재

### 2. 보안관리 이행계획

0

\_

#### 작성 요령(제출시 삭제)

○ 참여인력 보안교육, 제공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보안사고 예방·대응 방안 등을 기재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김천 스마트 물류 복합시설 활용 기술개발 참여 기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기업 선정관련 정보 안내 및 사업운영에 활용	대표자명, 실무자, 참여인력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직위/직책 등	본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지원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즉시 파기)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지원사업 참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목적	항목	이용기간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운영업체(KC네트웍스)	개발기술 활용을 위한 관련업무 수행	대표자명, 실무자, 참여인력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직위/직책 등	본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지원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즉시 파기)

※ 귀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 지원사업 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필수)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귀하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귀하는 귀하 본인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확인하였으며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5.

동의자 성명: (서 명)

한국도로공사 사장 귀하

### 붙임 4 협약서(안)

## 김천 스마트 물류 복합시설 활용 기술개발 협약서(안)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00(이하 "00"(이)라고 한다.)은(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김천 스마트 물류 복합시설(이하 "복합시설"이 라 한다.) 활용 기술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공사"와 "00"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개요) "도로공사"는 "00"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 원을 위하여 "복합시설"을 제공한다.
  - ① 위 치 : 김천1일반산업단지內(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2008-1일대)
  - ② 제공시설: 테스트베드(공용), 드론 이·착륙장(공용), 테스트베드 사무실(단독)
-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입주일을 기준으로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이내 기술개발이 어려워 "00"이(가) "복합시설" 활용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기술적 난이도 등을 고려해 "도로 공사"와 협의하여 필요 시 1년 연장한다.

### 제4조(협약당사자들의 권한과 책임)

- ① "도로공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가. 테스트베드 및 드론 이·착륙장, 사무공간 제공
  - 가. 기술개발 및 실증 현장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나. 기술개발 및 실증 성과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 ② "00"은(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가. 성실한 기술개발 및 실증 수행
  - 나.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 다. 기술개발 및 실증 참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 라.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계획서
  - 마. 기술개발 및 실증에 관한 진도보고서 제출(분기)
  - 바. 기술개발 및 실증에 관한 최종보고서 제출
  - 사. 활용시설에 대한 보안관리
- 제5조(협약의 변경) 협약당사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본 협약의 내용 변경 이 필요할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협약 종료 6개월 전까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협약의 해지) "도로공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00"이(가) 기술개발 및 실증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등 지원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도로공사"가 제공하는 시설물을 기술개발 및 실증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③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업체로 선정된 경우
  - ⑤ 협약내용을 위배하거나 협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 ⑥ 기술개발 및 실증을 포기한 경우
  - ⑦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하거나 보완조치사 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⑧ "도로공사"가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 권한을 타인 또는

타기관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한 경우

- ⑨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기술개발 및 실증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 ⑩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원 필요성을 상실한 경우
-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본 협약의 이행 기간 동안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협약 체결 및 이행과정,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정 등에서 취득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 및 문서 등을 포함한 자료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 3자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 ② "00"은(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한 보안각서를 입주 시 제출하여 야 한다.
  - ③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는 계속 존속한다.
- 제8조(안전관리의 의무) ① "도로공사"가 제공하는 시설물(테스트베드 (423㎡, 입주사 공용), 테스트베드 사무실 #0(00㎡, 입주사 전용) 등) 내에서의 안전관리의 책임은 "00"에 있다.
  - ② "00"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기술개발 및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사전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위험요인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입주 후 기술개발 및 실증 착수 5일전까지 "도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개발 및 실증 내용이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를 기술개발 및 실증 착수 5일전까지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00"은(는) "도로공사"가 제공하는 시설물 특성에 따른 유해·위 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

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도로공사"에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도로공사"는 최초 기술개발 및 실증 착수일 이전에 해당 위협 요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 및 실증을 취소하거나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도로공사"는 "00"이(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00"은(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④ "00"은(는) 기술개발 및 실증 참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기술개발 및 실증을수행하여야한다.
- ⑤ "도로공사"가 제공하는 시설물에서 기술개발 및 실증 전후 발생한 위험요인의 즉시 제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00"은(는) 기술개발 및 실증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도로공사"에 고지해야 한다.
- ⑥ "00"의 사용승인사항 위반, 본 협약 관련 대책강구 및 조치 미흡, 과실이나 부주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사고, 피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00"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도로공사"는 이와 관련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9조(기술적용) ① "도로공사"는 다음에 따라 "00"이(가) 개발한 기술이 복합시설 내 물류센터 운영업체의 요구성능을 만족할 경우 물류센터에 적용하여 실증 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 가. 물류센터 운영업체는 "00"이(가) 개발한 기술의 물류센터 적용가능 여부 및 요구성능(안)을 제시한다.
  - 나. "도로공사"는 "도로공사"가 구성하는 전문가 자문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00"이(가) 개발한 기술의 물류센터 적용 가능 여부 및 요구성능(안)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 ② "도로공사"는 김천시와 협의해 "00"이(가) 김천시의 드론 배송

실증 경로를 활용해 개발한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10조(장비 등 설치 사전협의) "00"은(는)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하여 장비 등을 "도로공사"가 제공하는 시설물에 설치하기 5일 전까지 "도로공사"와 사전협의(설치 및 철거일정, 설치조건 및 안전관리계획 등)를 해야 한다.
- 제11조(원상복구의 의무) ① "00"은(는) 기술개발 및 실증 또는 기술적용 과정에서 "도로공사"가 제공하는 시설물의 파손, 손상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② "00"은(는)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해 "도로공사"가 제공하는 시설물에 설치한 장비 등을 10조에 의거 사전 협의 조건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계자료 제출 등) "00"은(는) "도로공사"가 요청할 경우 기술 개발 및 실증 현장확인, 관계자료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 등에 성 실히 응해야 한다.
- 제13조(사업계획서 제출) "00"은(는) 기술개발 및 실증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입주 시 "도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진도보고서 제출) "00"은(는) 기술개발 및 실증에 관한 진도보고서를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도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최종보고서 제출) "00"은(는) 기술개발 및 실증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도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위험물 취급 주의 및 화재예방) ① "00"은(는) 유류, 전기 등의

-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 관계법을 준수 하여야 하며,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도로공사"가 제공하는 시설물 의 파손, 손상 등이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② "00"은(는) 화재예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00"의 과실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도로공사"가 제공하는 시설물의 파손, 손상 등이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17조(소유물 관리 책임) "00"은(는) 기술개발 및 실증 수행 등을 위한 장비 등 "00"의 모든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하여 유실, 손실, 도난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소유물 유실 등 피해를 입더라도 "도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8조(사용료) ① "도로공사"가 제공하는 시설물 사용 임대료를 제외한 전기세, 수도세 등의 제세공과금 등은 "00"의 비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00"은(는) 물류센터 운영업체와 협의해 청소비, 경비비 등을 "00"의 비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9조(사용제한) "도로공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00" 와(과) 별도 협의하지 않고 "00"의 시설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① "00"이(가) 본 협약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②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
  - ③ 기타 부득이 사용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제20조(협약서의 해석) 본 협약 해석에 있어 상호 견해가 다를 경우 "도로공사"와 "00"이(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호 협의되지 아니하여 법적 분쟁 발생 시 "도로공사" 본사 관할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 제21조(보칙) 본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공사"와 "00"이 (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22조(기타) ① "00"은(는) 기술개발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도로공사"의 지원을 받았음을 밝혀야 한다.
  - ② "도로공사"는 본 사업을 통한 기업 지원 성과를 공개할 수 있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도로공 사"와 "00"이(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2025년 월 일

한 국 도 로 공 사 0 0 주 식 회 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주 소 사 장 함 진 규 (인) 대표이사 0 0 0 (인)